제 호

운전면허증 갱신발급(적성검사) 연기사실확인서

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**즉시**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	전자우편 주소	

면허종류						
면허번호						
면허발급일			운전면허갱신기간 (적성검사기간)	~		
연기신청일						
연기종료일						
연기사유	해외체류	질병	구속	군복무	재해	기타

위 사람은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또는 적성검사가 연기되며, 소지한 운전면허 중에 기재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증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도로교통공단 ○○운전면허시험장의 장 인

유의사항

1. 이 확인서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.
2. 연기 종료일과 관계없이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 갱신발급 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연기 종료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(갱신·적성검사 시 연기사유 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).
4.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적성검사 연기가 가능합니다.